

제 호

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확인증

교육 이수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 :)		
이수 과정 차기	과정명		이수일자	
교육기간	<div> <div>년</div> <div>1월 31일</div> <div>~</div> <div>년</div> <div>12월 31일</div> </div>			

위의 사람에 대하여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합니다.

년

월

일

경찰청

로고

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

한국도로

교통공단

로고

(주)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인과 로고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운전자용: 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유의사항

1.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73조제4항에 따라 반드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2.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계속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3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3년마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